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연월일	20 . . . (제 회)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출자	국무위원 ○○○ (국토교통부장관)
제출연월일	20 .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여건 등에 따라 광역버스운송사업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현행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운영비를 각각 100분의 50씩 부담하고 있는 비율을 지방자치단체가 광역버스 수송력 공급이 긴급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 자체적으로 확보한 재정 투입이 가능하도록 하고자 함

나. 광역버스운송사업의 범위에 대도시권 내에서 둘 이상의 시·도에 걸쳐 운행하면서 일상적인 교통수요를 담당하는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추가하는 사항을 포함한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법률 제21171호, 2025.12.2. 공포, 2026.6.3.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광역버스운송사업의 구체적 범위, 광역버스종합정보체계의 구축·운영 업무의 위탁기관 지정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3. 주요토의과제

없 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없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6. 00. 00. ~ 00. 00.) 결과

3) 행정규제 :

대통령령 제 호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2제3항 중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제3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및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운송사업”으로, “시내버스운송사업”을 “시내버스운송사업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2제6호에 해당하는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이하 “광역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14조의3제1항 중 “운영비”를 “운영비(이하 “광역버스운송사업 운영비”라 한다)”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광역버스운송사업의 지역별·유형별 여건 등을 고려하여 국가 부담비율을 100분의 50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와 같이 조정할 수 있다.

제14조의3제1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광역버스운송사업의 탄력적 운영을 위해 해당 광역버스운송사업 운영비에 대한 국가 부담비율의 조정을 요청하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기간과 범위 등을 협의

하여 조정

2. 출퇴근 시간대에 정기적 수송수요 해소를 위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1조에 따라 공동운수협정을 체결한 전세버스 또는 같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가 보유한 예비자동차를 투입하는 경우 해당 운영비의 30퍼센트

제14조의4제4항 중 “광역버스종합정보체계 구축·운영 업무를 「한국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위탁한다”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한다”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대한 광역버스종합정보체계 구축·운영 업무: 「한국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한국교통안전공단
2. 광역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대한 광역버스종합정보체계 구축·운영 업무: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철도기술연구원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6월 3일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4조의2(광역교통시설) ①·② (생략) ③ 법 제2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이란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호가목 후단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여 구분하는 운행형태 중 광역급행형·직행좌석형에 해당하는 시내버스운송사업을 말한다.	제4조의2(광역교통시설)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제3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및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운송사업”----- ----- ----- --- <u>시내버스운송사업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2제6호에 해당하는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이하 “광역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이라 한다)</u> 을 ----.
제14조의3(광역버스운송사업 운영비 지원에 관한 비용의 분담 등) ① 법 제10조의2제1항 전단에 따라 광역버스운송사업 중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 사업의 <u>운영비</u> 는 국가와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각각 100분의 50씩	제14조의3(광역버스운송사업 운영비 지원에 관한 비용의 분담 등) ① ----- ----- -- <u>운영비(이하 “광역버스운송사업 운영비”라 한다)</u> -----

을 부담한다. <단서 신설>

<신설>

<신설>

제14조의4(광역버스종합정보체계의 구축·운영) ① ~ ③ (생략)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0조

-----. 다만, 광역버스운송사업의 지역별·유형별 여건 등을 고려하여 국가 부담비율을 100분의 50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와 같이 조정할 수 있다.

1.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광역버스운송사업의 탄력적 운영을 위해 해당 광역버스운송사업 운영비에 대한 국가 부담비율의 조정을 요청하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기간과 범위 등을 협의하여 조정

2. 출퇴근 시간대에 정기적 수요 감소를 위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1조에 따라 공동운수협정을 체결한 전세버스 또는 같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가 보유한 예비자동차를 투입하는 경우 해당 운영비의 30퍼센트

제14조의4(광역버스종합정보체계의 구축·운영)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0조

의3제3항에 따라 <u>광역버스종합정보체계 구축·운영</u> 업무를 「<u>한국교통안전공단법</u>」에 따른 <u>한국교통안전공단에 위탁한다.</u> <u><신 설></u> <u><신 설></u>	의3제3항에 따라 <u>다음 각 호의 업무를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한다.</u> 1. <u>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대한 광역버스종합정보체계 구축·운영</u> 업무: 「<u>한국교통안전공단법</u>」에 따른 <u>한국교통안전공단</u> 2. <u>광역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대한 광역버스종합정보체계 구축·운영</u> 업무: 「<u>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u>」에 의하여 설립된 <u>한국철도기술연구원</u>
--	---